

“두드림 LA” 회칙(“DODREAM LA” BY-LAW)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 단체의 명칭을 두드림 (DODREAM) LA(이하 ‘단체’) 라 칭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 단체의 소재지는 LA County 안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 악기 연주를 가르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.

제 4 조 (단원) 단체의 단원은 본 단체의 목적(제 3 조) 에 찬성하는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단원이 될 수 있다.

제 5 조 (단원의 의무)

1. 단체의 모든 단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월 1 일 또는 첫 연습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.
2. 모든 단원은 모든 연습과 공연, 봉사활동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할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 시간 적립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.
3. 모든 단원은 단체의 설립목적에 동의해야 하면 본 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회칙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6 조 (활동)

1. 단체의 매주 연습 활동
2.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 활동
3. 단체가 참여하는 봉사 활동

제 7 조 (학부모회) 단체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단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조직한다.

제 8 조 (학부모회 임원) 학부모회는 임원으로 회장(1 인),총무(1 인) 을 각각 정한다.

제 9 조 (학부모회 임원 선출, 임기, 업무)

1. 학부모회 회장, 총무의 임기는 1 년으로 정하며 유임이 가능하다.
2. 회장은 단체의 총괄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.

3. 총무는 회장을 도와 단체를 운영하며 각종 업무를 지원한다.

제 10 조(학부모회 총회)새로운 학년도(School Year) 시작 이후 학부모회 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. 학부모회 총회는 임원들의 동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(단원 강제탈퇴)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는 경고 후 단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.

1.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
2. 단체의 학부모회에서 건전하지 않은 행동을 한 학부모의 단원

제 12 조(단원 포상) 단원들의 각종 활동 참석 시간을 기준으로 포상을 시행한다. 포상 기준은 제 2 장 부칙으로 정한다

제 2 장 부칙 (포상 기준)

Teens Age Group: 11-15, Young Adult Age Group: 16-25

Awards	Hours Required to Earn Awards
대통령상 (GOLD)	T: 100 Hours +, YA: 250 Hours +
대통령상 (SILVER)	T: 75-99 Hours, YA: 175-249 Hours
대통령상 (BRONZE)	T: 50-74 Hours, YA:100-174 Hours
시장 상	TBD
상원의원 상	TBD
하원의원 상	TBD

Community Service Hours	
연간 수업 횟수(총: 34 주/년)	3 Hours
연간 공연 횟수 (추가 될 수 있음) (M: 4 회/년, NM: 5 회 /년)	Major Performance: 20 Hours
	Non-major Performance: 10 Hours
지도교사 평가 (참여, 태도, 연주 능력 판단 후 CSH 부여)	최대 30 Hours

**** 두드림 LA 외 행사 또는 다른 단체를 통해 획득한 COMMUNITY SERVICE HOURS 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****